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일 : 2003. 04. .

제출자 : 속 초 시 장

1. 제안이유

-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 개정
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방위협
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 및 취약지 대비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안 제2조)
 - 의장(시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40인 이하로 구성
-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안 제3조)
 -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훈련지원대책, 취약지역 대비책 등
-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운영(안 제6조)
 - 상황실 : 실장(부시장)과 15인 이내 반원으로 구성
 - 지원반 :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재정, 군·경연락반으로 구성(반장포함 3인이상 7인이하)

3. 참고사항

-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
-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
-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속초시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속초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속초시의회의장
2. 속초교육장
3.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4. 국가정보원 속초대공상담소장
5. 속초경찰서장
6. 속초해양경찰서장
7. 육군 제522기무부대장
8. 육군제5790부대장
9. 육군제1799부대(102여단) 부여단장
10. 육군제2713부대 36관리대대장
11. 기타 협의회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울충 및 병충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3.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 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4. 방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 각목의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 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5.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자체경비·보안 및 방호에 대한 지도·감독
6.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7.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의 발령
8. 취약지역의 대비책
9. 기타 협의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4조(협의회 운영)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3조제2호 울중 및 병중사태의 선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 자치행정과장
2. 민방위담당 간사 : 민방위업무담당과장
3. 작전담당 간사 : 속초경찰서 경비과장, 육군제5790부대 작전장교
4.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제2713부대 36관리대대 작전장교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속초시통합방위실무협의회(이라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의장은 속초시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합방위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6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동에 지원본부를 둔다.

②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으로 한다.

③상황실은 실장과 1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④시 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 군·경연락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동 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 2~3명으로 구성한다.

⑥지원본부의 각 반별 임무는 별표와 같다.

⑦기타 지원본부의 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7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안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병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통합방위지원본부와 각 반별 임무

기 구 명	임 무
지원본부장	1.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을 감독 2.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대표하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구성 및 운영을 지휘·감독 3. 통합방위지원본부 편성요원을 임명 및 위촉 4. 예하 행정관서의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지휘·감독 5.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를 협조 및 조정·통제 6. 상하 인접지원 부서간의 지휘 및 협조체제를 유지 7.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지원태세 유지 8. 각 분야별 주요 및 조치사항 종합
상황실(장)	1. 각종 상황을 파악 유지하고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 통제 2. 신속 정확한 정보전파 3.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를 파악 및 지원 지시 4.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필요시 방위협의회에 건의 5. 상하 행정관서의 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지휘·감독 6. 통합방위작전 지원계획을 조정·통제
총괄 지원반(장)	1. 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2.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인력동원 지원반(장)	1.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업무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업무관장 2.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을 유지 및 조정 3. 실비변상 및 가로, 구호 소요 제기 4. 국가동원계획의 인력 및 병력동원 집행을 준비 및 지원 5.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을 파악 유지 6. 주민통제 업무를 관장
건설·수송 지원반(장)	1. 산업·건설 및 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 판단·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 2.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용 3. 실비변상 및 회수·반환업무 관장 4. 국가동원 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5.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피해복구 업무관장

기 구 명	임 무
의료·구호 지원반(장)	1.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2. 의료·구호조를 편성 운용하고 의료시설 및 요원지정·통제 3. 급수 및 방역업무 시행 4. 국가동원 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5.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업무 수행 6. 작전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중에 부상을 당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업무 수행
통 신 지원반(장)	1. 통신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2. 지원본부 통신망을 구성 및 운용 3. 종합 통신 운영계획 수립 시행 감독 4.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5. 국가동원 계획의 통신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보급(급식) 지원반(장)	1. 보급 및 급식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작전동원병력 급식 및 보급 지원업무 관장 2. 보급 및 급식장비 획득 지원 3. 국가동원 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물 물자 동원 집행준비
홍 보 지원반(장)	1. 홍보 및 계몽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시행 2. 홍보매개체를 조정·통제하고 홍보(계몽)반을 편성 및 운영 3. 국가동원 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4.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시행
재 정 지원반(장)	1.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업무를 관장 2. 지원본부 운영예산 결산 3. 국가동원 계획의 재정동원 집행준비
군·경 연 락 반	1. 군·경 작전상황을 파악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전파 2.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상황을 군·경합동상황실에 보고